



것임(서면-2022-법규법인-4422, 2023.07.11.)

- 학교법인이 사립학교에 시설비·교육비·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사용되는 기부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부금 영수증(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 서식)의 “기부금 단체”는 사립학교가 되고 “기부금 수령인”은 학교법인이 되며, “기부금 모집처”는 작성하지 않는 것임(사전-2023-법규법인-0277, 2023.07.21.)

08 월세액 세액공제 (조특법 §95의2)

무주택 세대의 세대주(단독세대주 및 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)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(주거용 오피스텔, 고시원 포함)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(연 750만원 한도)의 15%(17%)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.

1) 공제대상자

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(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, 주택마련저축,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*을 포함한다)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(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)

* 다음의 1), 2)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인 외국인

- 1)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
 - 가. 「출입국관리법」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
 - 나. 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한 외국국적동포
- 2) 배우자,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(그 배우자를 포함) 및 형제자매가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·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·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

2) 공제율

- 총급여액 5,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자(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) : 15%
- 총급여액 5,500만원 이하자(종합소득금액 4,500만원 초과자 제외) : 17%



3)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

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주택[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(외국인의 경우에는 「출입국관리법」 제32조제4호에 따른 국내 체류지 또는 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)가 같아야 함]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(사글세액 포함)

※ 2017년부터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(배우자 등)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

※ 2014년부터 확정일자를 받을 요건이 삭제되었으므로,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세액공제 가능

4) 공제대상금액

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*이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됨

*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한 금액

5)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

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.

6) 공제증명서류

-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
- 임대차계약증서 사본, 계좌이체 영수증,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「소득세법」 제52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2조제1항에 따른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”의 관계에 있지 않은 거주자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동거인으로 기록된 경우, 그 거주자는 「소득세법」 제52조제4항의 적용상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와 별개의 세대로 보는 것임 (사전-2021-법령해석소득-0005, 2021.06.14.)

09 납세조합 공제 (소법 §150)

「소득세법」 제127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)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